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23-62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12. 13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



- 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및 동법 제29조 제1항 제9호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사유	十 坐
이○인	1997.07.17.	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종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대면상담 진행을 위한 의무출석일 미방문 및 연락두절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시천시 벌리2길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3. 12. 13. ~ 2023. 12. 27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신정(☎ 055-760-670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